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

의 안 번 호 '99 - 70

제안연월일 : 1999. 11. 19. 제 안 자 : 거 창 군 수

■ 제정이유

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■ 주요골자

- 가.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관련된 공무원 및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들로 구성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,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 항과 중요시책을 심의 (안 제3조)
- 나. 장기적인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여 국내외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- 다.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의 지원 범위, 지방세감면, 금융지원, 각종보조금(입지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시설보조금)의 지원기준을 규정 함. (안 제8조 내지 제15조)
- 라.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규정 함. (안 제16조 내지 제17조)
- 마. 도외기업의 군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『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』의 지정신 청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보조금(입지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시설 보조금, 이전보조금)의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을 규정함. (안 제18조 내지 제20조)
- 바.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최초입주기업이 계약해지되어 다시분양하는 토지에 대체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. (안 제21조)
- 사.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,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. (안 제22조)
- 아. 투자유치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. (안 제23조)
- 자.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

■ 제정근거

- 관련법규
 - 외국인투자촉진법, 시행령, 시행규칙.
 -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.
 -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, 시행규칙.
 - 거창군세감면조례
 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
- 시・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표준안.

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 적)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 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 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"외국인투자"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.
 - 2.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.
 - 3. "외국인투자지역"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.

제 2 장 투자유치 지원체제

- 제3조(투자유치위원회)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, 위원은 의회 및 소속 공무원,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, 법조계, 학계,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된다.
 -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
 - 2. 국내·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
 - 3.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 -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 제4조(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"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5조(투자유치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,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6조(투자유치진흥기금)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 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,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 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-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
 - 2.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
 - 3. 고용・교육훈련・시설・이전 등의 보조금
 - 4.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민원처리의 특례)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

- 제8조(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)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.
 -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(전체 보조 사업별 국·도비를 포함한다)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9조(지방세 감면)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 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거창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.

- 제10조(금융지원)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제11조(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)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2조(입지보조금)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촉진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(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%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.
 -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고용보조금)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, 사업개시 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교육훈련보조금)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 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- 제15조(시설보조금)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%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

- 제16조(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)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.
 - 1.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
 - 2. 기계, 자동차, 항공우주, 조선,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
 - 3.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 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
- 제17조(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) ① 군수는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 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%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.
 - ③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5 장 국내기업 투자지원

- 제18조(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) 군수는 경상남도(이하"도"라한다)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- 1.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
 - 2.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- 제19조(국내기업의 지원)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 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20%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0조(이전보조금)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%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) ①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,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 6 장 보 칙

- 제22조(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) ① 군수는 제12조내지 제20조의 보조 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수 있다.
 -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. 이 경우,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제23조(포상금의 지급) 군수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크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4조(다른 조례 등의 준용)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- 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